

## 2017 학년도 학교법인 삼육학원 영양교사 선발시험 시행 공고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설립 목적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산하 각급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할 영양교사 선발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 1. 모집 과목 및 선발 예정 학교

선발 예정 학교	모집 과목	인 원
한국삼육고등학교	영양교사	1명

### 2. 응시자격

- 가. 중등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포함)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초등 제외)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 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마.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

### 4. 서류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7. 3. 22.(수)~2017. 3. 27.(월)12:00까지(마감일) (토, 일 제외)
- 나. 제출장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한국연합회 교육부
- 다. 제출방법 : 본인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12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5. 시험별 일정

구분	시험 과목	일 시	시 간	장 소
제1차 시 험	전 공	2017. 3.29(수)	오후 02:00 - 02:50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 양(종교포함)		오후 03:00 - 03:50	
	면 접		오후 04:00 - 05:00	
<b>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31.(금) 재림마을 교육부 공지사항</b>				

### < 유 의 사 항 >

- ※ 시험시작 당일 법인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함  
: A4용지 2-3매, 글씨10, 줄 간격160로 작성 제출.
- ※ 시험장 입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함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실 불가)
- ※ 시험장 입실 시 모든 전자기기 소지 불가.
- ※ 시험 일정(날짜, 장소 등)은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재림마을 홈페이지> 교육부> 공지사항에 공고함.
- ※ 합격자 발표 : 재림마을 홈페이지(<http://www.adventist.or.kr/>)>교육부>공지사항

## 6.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삼육학원 소정 양식) 1부
- 나.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 다. 교원자격증 사본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마.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2부(소정양식)
- 바. 신원진술서 2부(소정양식)
- ※ 소정양식 - 재림마을 교육부 공지사항 다운로드

## 7. 합격자 결정

- 가.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전공시험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교양 시험 성적이 높은 자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자
  - 4순위: 면접 성적이 높은자
- 나 최종 합격자가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성적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 8.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3월 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 9. 기타사항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 별로 한 가지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사항에서 제외한다.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연합회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299-5236, 7)